

제343회 임시회
2015. 10. 21.(수)

심 사 보 고 서

2016년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계획안



충청북도의회
정책복지위원회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5년 10월 2일
- 회부일자 : 2015년 10월 5일

다. 상정일자 : 2015년 10월 20일

- 제34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김장희 기획관리실장)

가. 제안이유

-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 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□ 출연목적

- 「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」 제3조3항에 따라 지방행정 및 지역개발에 필요한 연구·조사를 위하여 행자부 및 전국 시도가 출연하여 설립·운영하는 재단법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운영재원 지원 ※ 전국 시도 균등 출연사업

□ 출연 예정액 : 150,000천원(도비 100%)

- 산출근거 : 2016년 광역시도 출연금 2,500백만원
- 16 시·도 각 150백만원 (세종시 100백만원)

※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사회 의결('14.12.23.) : 시도 기획실장 + 행자부 자치제도정책관 등

〈각 시도 출연 중기계획〉

구 분	2014년	2015년	2016년	2017년	2018년
출연금	1억원	2억원	1.5억원	1.5억원	1.5억원

□ 출연계획 (단년·반복사업)

(단위: 천원)

구 분 (기준보조율)	2015년			2016년 (C)	증감 (D=C-A)
	계(A+B)	당초(A)	추경(B)		
도비(100%)	200,000	200,000	0	150,000	△50,000

3. 검토보고 요지

(정책복지 수석전문위원 오범진)

- 행자부 및 전국 시도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자치제도의 발전과 지자체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연구·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, 2014.12.23.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사회에서는 각 시도 출연 중기계획(5개년)을 의결하여 16개 시·도가 매년 균등하게 출연하고 있음.

- 2016년도 광역시도의 출연금 총 규모는 2,500백만원으로,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중앙 - 지방간 상생·균형적 발전을 위한 연구기관으로서의 지속적 역할 수행을 위해서 공동 설립주체인 충북도의 출연 계획 및 규모(150백만원)는 타당하다고 사료됨.

< 2015 ~ 2019 출연금 중기계획(안) >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2015년	2016년	2017년	2018년	2019년
세입 계 (일반회계+타당 성조사특별회계)	10,952 (8,227+2,725)	12,074 (8,474+3,600)	12,328 (8,728+3,600)	12,590 (8,990+3,600)	12,860 (9,260+3,600)
출 연 금	5,406 (49.4%)	5,300 (43.9%)	5,300 (43.0%)	5,300 (42.1%)	6,300 (49.0%)
국가출연금	2,106 (19.2%)	2,800 (23.2%)	2,800 (22.7%)	2,800 (22.2%)	3,000 (23.3%)
광역 시도 출연금	3,300(30.2%) (시도당 2억원) *서울 : 1억원	2,500 (20.7%) (시도당 1.5억원) *세종 : 1억원	2,500 (20.3%) (")	2,500 (19.9%) (")	3,300 (25.7%) (시도당 2억원)
자체 수입	5,546 (50.6%)	6,774 (56.1%)	7,028 (57.0%)	7,290 (57.9%)	6,560 (51.0%)
전년 대비 증감 (시도 출연금)		△ 800	-	-	증 800

- 아울러,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는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개발 및 지원을 위해 각종 과제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바, 지역 현안과제 등 양질의 연구과제를 개발·의뢰함으로써 제시된 대안을 도정에 적극 반영, 경쟁력 강화에 적극 활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< 참고 : 2015년도 특별·광역 지방자치단체 정책과제 수행실적 >

- 수행 과제 : 17과제 (시도 당 1과제)

구 분	과제 수	의뢰 시도
상반기	15과제	서울, 대구, 광주, 대전, 울산, 세종, 경기, 강원, 충북, 충남, 전북, 전남, 경북, 경남, 제주
하반기	2과제	부산, 인천

※ 우리도 : 충북도내 남부·북부권역 중핵도시 육성방안('15.8~11월)

< 참고 : 2016년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사업계획 >

구 분	2015년	2016년	비 고
출 연 금	33억원 - 16사·도 : 각 2억원 - 서울시 : 1억원	25억원 - 16사·도 : 각 1.5억원 - 세종시 : 1억원	△8억원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정책 개발 및 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▸ 사·도 정책과제 ▸ 지방 국정과제 ▸ 지방자치 발전과제 ●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● 지방자치실천포럼 ● 공무원 역량 강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17과제 (사·도 개별) · 14과제 · 30과제 · 15과제 · 포럼 정착 및 성과창출 · 시책 및 직무교육 (5~6과정, 2박3일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계속) · 20과제 · 포럼 활성화 및 성과 확산 (계속) 	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론요지 : “생략”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2016년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계획안 1부.

1 출자·출연 심의요구서

주관부서	정책기획관실	소속부서장	팀 장	담당주무관	전화
	정책관리팀	박은상	김연준	김홍주	2133

기관명	한국지방행정연구원																				
출자·출연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 표 : 하혜수 (*재단법인) ○ 일반현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12-6 - 인 력 : 59명(원장1, 연구·전문직40, 투자분석직4, 연구지원직14) 																				
출자·출연 사업비	○ 출자·출연 예정금액 : 150,000천원(도비 150,000천원)																				
	○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(단위:백만원)																				
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구 분 (기준보조율)</th> <th colspan="3">2015년</th> <th>2016년 (C)</th> <th>증감 (D=C-A)</th> </tr> <tr> <th>계(A+B)</th> <th>당초(A)</th> <th>추경(B)</th> <th></th> <th>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도비(100%)</td> <td>200,000</td> <td>200,000</td> <td>0</td> <td>150,000</td> <td>△50,00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※ 산출근거 : 2016년 광역 시도 출연금 2,500백만원 - 16 시·도 각 150백만원 (세종 100백만원)</p> <p>❖ 2015 산출내역 : 기본 출연금 1억원 + 타당성조사 전담기구* 운영 특별출연 1억원 * 지방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지정(행자부 고시 제2014-2호, '14.11.29.) - 지자체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의무화</p> <p>❖ 2014~2018 광역 시도 출연금 중기계획(2014.12.23. 이사회 의결) - '14년 1억원 / '15년 2억원 / '16년 1.5억원 / '17년 1.5억원 / '18년 1.5억원</p>					구 분 (기준보조율)	2015년			2016년 (C)	증감 (D=C-A)	계(A+B)	당초(A)	추경(B)			도비(100%)	200,000	200,000	0	150,000
구 분 (기준보조율)	2015년			2016년 (C)	증감 (D=C-A)																
	계(A+B)	당초(A)	추경(B)																		
도비(100%)	200,000	200,000	0	150,000	△50,000																
출자·출연 필요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설립하여 운영하는 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한 출연을 통해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및 주민 행복도 향상을 위한 정책연구·개발 활동 수행 ※ 2015 정책과제 : 충북도내 남부·북부권역 중핵도시 육성 방안('15.8~11월) 																				
근거법령	<p>「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」 제3조3항</p> <p>③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와 제2조의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.</p>																				
지도감독 부서인권 (중 평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행자부와 시도가 공동 설립한 연구기관으로서, 각 시도는 연구원 운영비, 시설비, 기금에 충당하기 위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음 ※ 각 시도 균등 출연 ○ 중앙-지방간 상생·균형적 발전을 위한 역할 수행 등을 고려할 때, 한국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지원은 지속적으로 필요함 																				
첨부자료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관리 감독부서 검토결과서 2. 출자·출연기관 현황 3. 출자·출연사업계획서 																				

1-① 관리·감독부서 검토결과서

1 경영평가 및 외부기관 지적사항

- (경영평가) 2014년 행정자치부 산하기관 경영평가 : “보통”
 - 행자부 산하 7개기관 대상으로 매년 평가를 실시하여 기관장 성과연봉에 반영
 - 연구원의 주요사업인 연구분야에 있어 높은 점수를 받음(7개 기관 중 3위)
 - ※ 양호 2, 보통 3, 미흡 1, 아주미흡 1
- (성과계획서 성과 달성도 : 기획재정부)
 -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성과 만족도
 - 실적 : 88.8점(103.3% 달성) / · 목표 : 85.5점

2 출연금 예산요구 부서 검토 의견

- 한국지역행정연구원은 행자부와 시도가 공동 설립한 연구기관으로, 우리도를 비롯한 각 시도는 설립주체로서 매년 일정부분 출연금을 연구원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음
 - ※ 각 시도 매년 균등 출연
 - 우리도 출연내역 : '13년 67백만원 / '14년 100백만원 / '15년 200백만원
- 지방행정에 관한 정책개발과 제도개선 과제를 연구하는 기관으로서 선진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 및 정책지원 기능을 지원하는 등 지방행정 발전에 중요한 역할 담당
 - ※ 지자체 신규사업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지정(행자부 고시 제2014-2호, '14.11.29.)
- 이상과 같은 중앙-지방간 상생·균형적 발전을 위한 연구기관으로서의 지속적 역할 수행을 위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지원이 필요함

3 운영비성 출연금 검토

(단위:천원)

구 분	2015년 (C)	2016년 예산안			전년대비 증감액 (B-C)
		기관 요구액(A)	실과 산정액(B)	증감(B-A)	
출연금	200,000	150,000	150,000	-	△50,000

4 출연금 요구 적정성 여부

사업목적 명확성	출연의 타당성	유사 중복성	사업방식 효율성	사업의 시급성	투자대비 효과성	재원분담 적절성
여	여	부	여	여	여	여

1-2 출자·출연 기관현황

설립근거	『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』				전화번호 : 02-3488-7373			
					홈페이지:www.krila.re.kr			
주요연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984. 9 지방행정연구소 개소 - 1986. 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개칭 - 1986. 5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 제정 - 2002, 2004 경영혁신평가 우수기관 선정 - 지방자치단체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지정 			기관형태 (출자, 출연)	출연기관 (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동 출연기관)			
인원현황 (‘15.8월 현원기준)	계		정규직		비정규직			
	60명		59명		1명			
임원 (‘14.8월 기준)	직책 (직책명)	성명 (의명처리)	주요경력 (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)		임기 (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)			
	원장	하○○	경북대 행정학부 교수		2015.04.13~2018.04.12			
	당연직이사 (비상임)	20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행자부(5) : 지방행정연구원장, 지방행정연수원장, 자치제도정책관, 지역발전정책관, 지방재정정책관 - 광역 시·도(16) : 기획관리(조정)실장 		당해직위 재임기간			
	임의직이사 (비상임)	8인	학계 전문가		2015.06.08~2017.06.07			
주요기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방행정에 관한 중장기 계획 및 자료의 조사·연구 - 지방행정의 주요 당면과제에 대한 조사·연구 등 							
자본금 ¹⁾ (단위:백만원)		36,238			출연액 (단위:백만원)			
최근3년 간 예산 현황 (단위:백 만원)	연도		2013	2014	2015	재무현황 (백만원) ‘14.12.31기준		
	일반 회계	예산액 ²⁾	8,143	8,171	8,227		자산	45,044
		지자체 지원액 ³⁾	1,000	1,600	1,700		부채	9,106
	특별 회계	예산액 ²⁾	-	-	2,725		자본 ¹⁾	36,938
지자체 지원액 ³⁾		-	-	1,600				
2014년 경영성과 (단위:백만원)	총수익			총비용		당기순이익		
	7,322			7,224		98		

1) 자본금은 자본(자산-부채)의 한 부분이며, 자본은 자본금, 자본잉여금, 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됨

2) 해당 기관의 매 회계연도별 확정된 예산액

3) 해당 기관 예산액(2) 번항목)중 지자체가 보조한 금액

1-③ 출자출연 사업계획서

사업명	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 지원	구분	출자	-
주관부서	정책기획관실		출연	150,000천원(도비)

□ 목적 및 필요성

-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 지자체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연구·개발
- 지방행정 및 지역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·연구

□ 출연개요

- 사업명 :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비 지원
- 사업기간 : 2016. 1 ~ 12월
- 출연금액 : 150,000천원(도비 100%)
- 주요내용 :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사업 지원
- 출연근거 : 「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」 제3조3항

□ 산출기초

- 전국 16 시·도 균등출연 : 각 150,000천원 (세종 100,000천원)

【 연도별 출연 내역 】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합계	'08년	'09년	'10년	'11년	'12년	'13년	'14년	'15년
출연금	367	-	-	-	-	-	67	100	200

□ 기대효과

- 충청북도의 지방자치 현안에 대한 정책대안 발굴
- 지방자치에 대한 객관적, 중립적 정책연구 활성화
- ※ 2015 정책과제 : 충북도내 남부·북부권역 중핵도시 육성 방안('15.8~11월)

□ 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

- 이사회 의결(2014.12.23.)을 통해 전국 균등 출연을 합의한 바, 우리도만 미출연 곤란

관련법령 발취

□ 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 <개정 2014.5.28.>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 <신설 2014.5.28.>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 <개정 2014.5.28.>

부칙 <법률 제12687호, 2014.5.28.>

제6조(출자·출연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)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□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

제3조(출연금) ① 연구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, 그 밖의 수입금에 의하여 운영한다.

② 국가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와 제2조의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.

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,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1.3.8.]